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특허 분류에 대한 계획 입안

- WIPO 2000년 3월 24일 -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후원하의 전문가 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특허분류 제도의 더 많은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승인하였다.

국제특허분류연맹의 전문가 위원회는 IPC가 여전히 사용자들에게 관련되어 있고, 범 세계적 정보 자원으로 서 좀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에 동의하였다. 특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한 승인되었다.

국제특허분류(IPC) 제도는 특허 정보가 섹션, 류, 하위 류 및 그룹(주 그룹, 하위 그룹)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세분화된 계층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발명의 신규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선행 기술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특허 문서를 검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특허허여 기관, 잠재적인 발명가, 연구 개발 기관, 기술 적용 혹은 개발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IPC는 연관된 유용한 정보 자원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는 IPC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1999년 WIPO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의 노력으로 IPC를 전세계의 특허 정보 체도를 공급하고 모든 산업재산권청과 일반인들의 필요에 응하는 정보 자원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전략적 계획 하에서, 개혁된 IPC의 골격은 2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구조는 소규모 특허청, 특히 개발도상국 특허청과 일반인의 특허정보 필요에 응할 것이다. 고급 구조는 PCT하의 국제 조사 기관 (ISA)과 같은 큰 규모의 특허청의 정보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총괄 분류 데이터베이스 (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의 구축을 승인하였다. 이 정보도구는 개혁된 IPC의 기동 중 하나로 세계의 특허 문서 및 특허 관련 기술 문헌과 관련된 분류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 발전은 지식재산권 디지털 도서관의 중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며, 전세계에 걸쳐서 발명에 관한 정보의 포괄적인 자료에 대한 드넓은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IPC를 특히 비전문가들에게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범 지구적 특허 정보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조치들이 또한 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지속적인 범 지구적 적용을 위해서, 전자적 데이터 이미지가 IPC의 내용을 묘사하는데 도입될 것이다. 이 데이터는 또한 분류 그룹, 화학공식을 포함한 기술적인 용어, 표현의 정의와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IPC 개혁의 상황을 자세히 토론하고 나서 위원회는 IPC 정책 및 절차의 변경, 특허 정보의 수집의 재분류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청간의 협력, IPC 규칙의 간소화, IPC 사용에 관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현대적 정보 기술 도구 설치 등을 포함한 광대한 범위의 활동을 포함한 올해의 개혁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진척상황은 2001년 2월에 열리는 다음 분기회의에서 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다. 2000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의 WIPO 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20개국과 유럽 연맹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IPC 배경

국제특허분류(IPC)는 1971년에 마무리하여 1975년에 발효된 WIPO 주관 국제 조약인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체약국이면 가입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45개국 이 다자간 협정의 체약국이다. 그러나 90개국 이 넘는 산업재산권청, 4개의 지역 특허청, 특허협력조약(PCT) 하의 WIPO 사무처에서 실제로 IPC를 사용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IPC의 제7판은 8개의 섹션(section), 120개의 類(class), 628개의 副類(subclass)와 대략 69,000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부

류는 아라비아 숫자와 라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번호가 매겨진다. 적절한 IPC 번호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1,000,000건이 등록된 각 특허 문서(공개된 특허 출원 및 등록된 특허)에 표시되어진다. IPC 번호는 특허문서를 발행하는 각국 혹은 지역 산업재산권청에 의해서 할당된다. IPC를 최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 IPC는 계속해서 개정되고 새로운 개정판은 매년 5년마다 발간된다.

발명가와 기술 이전 거래를 위한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 영국 특허청 2000년 3월 27일 -

하 이테크 회사들과 발명가들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발명과 혁신을 조장하는데 목적을 둔 예산 변경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 같다. 2000년 3월 28일부로 지식재산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에 인지세(stamp duty)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Frank Miles 영국 특허청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더 쉽고, 저 비용의 그리고 모든 기업화 개인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였다.

"1998년에 특허 심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50% 인하되었고, 잇따라 1998년에는 특허청 수수료의 전반적인 인하(특허출원 수수료의 폐지를 포함)가 있었다. 이번의 최근 변화는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권 거래에 있어서 인지세를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매매 혹은 실시하여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거래 등록을 좀 더 쉽게 함으로써 형식에 얽매인 관행을 적절하게 될 것이다.

인지세의 폐지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특허, 상표, 등록된 의장, 저작권 혹은 의장권
2. 모든 식물 재배자의 권리 및 1997년 식물 변종법의 제7조 하의 권리

3. 위 1항, 2항 내의 모든 권리에 관한 모든 실시하여 혹은 다른 권리 혹은
4. 위 1항, 2항, 3항 내의 그러한 권리에 상응하거나 혹은 유사한 권리로서 영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 하의 모든 권리

2000년 3월 28일 혹은 그 이후에 성사되는 거래에 있어서서는 거래가 모든 특허, 의장 혹은 상표 등록부에 등록되기 전에는 그전에 직인이 필요했던 모든 증명서류에 실제적으로 직인이 찍혀져 왔다.

결과적으로 특허 양식 21/77, 등록 의장 양식 12A, 그리고 상표 양식 TM16에 관한 인지세에 관련된 선언은 2000년 3월 28일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률적 목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00년 3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종래의 체계가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다.

지식재산권과 다른 종류의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 혼합된 거래에 있어서, 인지세는 전체에서 지식재산권 일부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만 폐지되며, 증명서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직인이 필요하다.